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23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5년 10월 29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11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과장)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서 외부위원이 포함된 별도의 심의·조정위원회가 있는 경우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심의를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평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조항 삭제
: 안 제5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기존)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정책실명제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본청 실·과장급 공무원 및 군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⑦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①, ③, ④, ⑤, ⑦ 삭제

- 평창군 정책실명제 심의를 「평창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변경 : 안 제5조제2항

(기존)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평창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한다.

- 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 안 제5조제2항 →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6항 → 제5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유진)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5. 10. 23.
- 회부일자 : 2025. 10. 29.
- 상정일자 : 2025. 11. 3.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서 외부위원이 포함된 별도의 심의·조정위원회가 있는 경우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심의를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평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조항 삭제
: 안 제5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기존)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본청 실·과장급 공무원 및 군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⑦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①, ③, ④, ⑤, ⑦ 삭제

- 평창군 정책실명제 심의를 「평창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변경 : 안 제5조제2항

(기존)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평창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한다.

- 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 안 제5조제2항 →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6항 → 제5조제2항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3조의5에서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평창군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의 심의를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의 통폐합을 통해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제5조제1항의 평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두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안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2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며, 제5조제6항을 안 제5조제2항으로 규정함.
- 위원회 구성, 임기 등과 관련된 조항(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은 삭제함.

5. 종합검토의견

- 행정안전부는 2022부터 2027년까지 총 3천개의 위원회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합하는 등 정비 지침에 따른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평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 및 제3조제6호의 인용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2023. 6. 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므로 추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제명을 현행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 2. 18.]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본조신설 2014. 2. 18.]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1
----------	-----

제출연월일 : 2025. 10. 2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서 외부위원이 포함된 별도의 심의·조정위원회가 있는 경우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심의를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평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조항 삭제
: 안 제5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1) (기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본청 실·과장급 공무원 및 군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1) (개정) ①, ③, ④, ⑤, ⑦ 삭제

나. 평창군 정책실명제 심의를 「평창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변경: 안 제5조제2항

1) (기존)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정)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평창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한다.

다. 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 안 제5조제2항 →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6항 → 제5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8. 28. ~ 2025. 9.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1290호, 기획예산과-13474(2025. 8. 28.)호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13289(2025. 8. 25.)호]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13289(2025. 8. 25.)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32003(2025. 8. 28.)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15475(2025. 10. 1.)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 [기획예산과-16298(2025. 10. 20.)호]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평창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6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1. ~ 3. (생략)</p> <p>③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u></p>	<p>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u><삭제></u></p> <p>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u>심의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평창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u><삭제></u></p>

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본청 실·과장급 공무원 및 군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② (현행 제2항과 같음)

⑦ <삭제>

관계 법령 발췌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김 두 기
연락처	(033) 330 - 2220